



제출된 자발적 친자관계 확인서 취소 방법

자발적 친자 확인서를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자발적 친자관계 확인서에 서명한 부모 중 어느 한쪽이든, 마지막 부모가 서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취소를 요청하는 사람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양육권, 면접교섭권 또는 양육비에 관한 법원 명령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철회(rescission)”라고 하며, 해당 확인서에 의해 형성된 법적 부모/자녀 관계를 취소합니다. 확인서를 철회하려면 부모 중 한 명의 서명만 있으면 됩니다.
- 부모 중 한 명이 자발적 친자관계 확인서에 서명할 당시 18세 미만이었다면,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CalParentage.org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친자관계 확인서 취소 방법

- 해당 날짜는 자발적 친자관계를 서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단,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위 내용 참조).
- 온라인 또는 이메일로 제공되는 “철회 신청서(DCSS 0915)”를 작성하시고, 연락처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 귀하의 서명은 공증인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DCSS 0915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취소를 요청하는 부모는 같은 주소에 함께 거주하더라도 확인서에 서명한 다른 부모에게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우편물 발송 증명이 필요합니다.
- 작성 완료된 원본 서류와 우편 발송 증빙을 다음 주소로 보내십시오Parentage Opportunity Program, P.O. Box 419070, Rancho Cordova, CA 95741 봉투의 소인 날짜는 확인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60일 이내여야 합니다.

법정에 가지 않고도 법적 친자관계를 확립할 수 있으며, 비용도 무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CalParentage.org

문의하기
AskPOP@dcss.ca.gov
916.464.1982

서비스 이용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시 - 오후 5시
토요일 - 일요일: 휴무